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조문 정비〉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66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조문 정비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9.
3. 회 부 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음.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현행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

고 있음.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23조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조문 정비

개정안은 윤준병의원이 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에 식량의 자급 목표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7조 및 제32조, 안 제14조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23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u>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u>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 ----- ----- ----- <u>식품지원</u> ----- ----- -----.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u>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u>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u> <u>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u> <u>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u> <u>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u> <u>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u> <u>록 노력하여야 한다.</u> 2의2. (생략) 3. ~ 6. (생략)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u> <u>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u> <u>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u> <u>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u> <u>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u> <u>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u> <u>지표로 활용한다.</u> 1. <u>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u> <u>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u> 2. <u>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u> <u>의 곡물자급률</u> 3. <u>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u> <u>의 자급률</u> 3의2. <u>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u> 4. <u>삭제<2015.6.22.></u> 5. <u>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u> <u>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u> <u>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u> <u>말한다)</u> ④ ~ ⑦ (생략)	2의2.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 ----- ----- --기본계획-----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현 행	개 정 안
<u>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제14조제3항제1호에</u>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 ----- 「<u>식량안보 기본법</u>」 <u>제7조제3항에</u>-----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은 식량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식량안보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업 등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식량안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윤준병의원은 동 개정안과 함께 식량안보에 관한 정책수단 및 식량위기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규정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 번호 제2213364호)”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현재 「농업식품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식량안보 관련 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식량안보 기본법안”에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비교 】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u>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u>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 ----- ----- ----- ----- ----- <u>식품 지원</u> ----- ----- ----- ----- -----.	제6조(식량안보 정책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u>적정한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② ----- ----- ----- ----- ----- -----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삭 제> <삭 제>	6. 식량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제6호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식량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식량안보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전체 농수산물(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자급률 및 농수산물을 원료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2015.6.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로 하는 식품의 자급률 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3.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급목표사항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 ----- ----- -----기 본계획----- ----- ----- ----- ----- ----- ----- -----.	제10조(식량안보 정책 추진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매년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식량 등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식량위기 대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식량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 식량자급률 달성 시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수산물을 비롯한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농지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③ 정부는 <u>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11조(식량위기 대응)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이에 개정안은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식량안보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인용 사항을 제정안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안보 기본법안”을 의결함에 있어 현재 「농업식품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 사항을 해소하는 조문 정비의 차원에서 동 개정안을 함께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안 제17조제1항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연차보고서에서 식량의 자급목표에 관한 내용을 단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본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현황’으로 수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자급목표 외에도 ①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②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③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④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⑤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⑥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따라서,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현황’을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현황’으로 수정하는 경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행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에 관련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법률의 제정 시 「농업식품기본법」 역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그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미 현행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단순히 “기본계획”으로만 서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